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32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김미애 · 주호영 · 성일종
인요한 · 강승규 · 김기현
이종배 · 김승수 · 김상훈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 고립,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제1항 신설).
- 나.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기별로 보고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2항 등).
- 다.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등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 라.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4항 중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착 실태 등 파악”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검진

제22조의3의 제목 “(전문상담사제도 운영)”을 “(심리상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상담 등의 대상·방법·절차 및 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우울·불안·고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5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 북한이탈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된다.

1.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
2.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제27조의2(위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통일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통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협의회를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계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3. 의료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 실태 등의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③ (생 략)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 우에 <u>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u> <u>조사</u> 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 다. ⑤ · ⑥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u> <u>조사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u> <u>정착 실태 등 파악</u>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 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제22조의3제1항에 따른</u> <u>심리상담 및 검진</u>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u>전문상담사제도 운영</u>) <u><신 설></u>	제22조의3(<u>심리상담 등</u>) ① 통일 부장관은 <u>우울 · 불안 · 고독, 외</u> <u>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u> <u>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u>

① (생 략)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의무) (생 략) <신 설> <신 설>	<u>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 ----- -----.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등의 대상·방법·절차 및 제2항·제3항----- -----. 제23조(보고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5(통합사례관리 대상 지정) 북한이탈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신 설>

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 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된다.

1. 3개월 이상 주소지 내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

2.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제27조의2(위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통일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협의회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계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3. 의료비